제26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·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0. 2. 19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·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0년 2월 19일
전문위원 정 우 숙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: 2020 - 12

나. 제 안 자: 윤유선 의원 외 10명

다. 제안일자: 2020년 2월 10일

라. 회부일자: 2020년 2월 17일

2. 제정이유

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하고 이해하여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·청소년 의회의 운영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
나. 운영계획 수립·시행, 일정에 대한 홍보 및 안내 규정(안 제3조, 제4조)

다. 어린이·청소년 의회 구성, 수요조사, 지원 사항 규정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)

라.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 규정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청소년 기본법」제2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0. 2. 11. ~ 2. 15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

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 함양이라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'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·청소년 의회'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홍보를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.

나. 검토 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강서구 '어린이·청소년 의회'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

○ 어린이·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올바로 이해하고,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

구의회 의장은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 하도록 하였으며

어린이·청소년 의회 일정에 대한 홍보 및 참여 인원 등

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 제정으로

현재 운영중인 어린이·청소년 의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·청소년에게 올바른 토론문화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인식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참고 관계 법령

❑ 청소년 기본법

제2조(기본이념)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·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.

1. 청소년의 참여 보장
2.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
3.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
4. 민주·복지·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